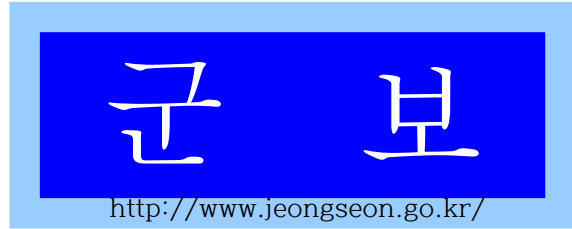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43호 2020. 10. 21.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0-240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20-244호 정선 예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5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0-1131호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20
- 정선군 공고 제2020-1143호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21
- 정선군 공고 제2020-1144호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28

○ 정선군 공고 제2020-1148호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37
○ 정선군 공고 제2020-1153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47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0-15호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57
○ 정선군 공고 제2020-1176호 예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재난감시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6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0-240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정선군 봉양리 54-7번지 일원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한 노선 결정(변경)으로 주민의 교통 편의 제공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4-7번지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정선도시지역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1	4~6	215	국지 도로	봉양리 54-56대	소로 2-11 애산리 432-426대	일반 도로	국토관리 사무소	강고제134호 (85.12.14)	-
변경	소로	1	23	4~10	340	국지 도로	소로 1-4 봉양리 78-24전	소로 2-11 애산리 432-426대	일반 도로	-	강고제134호 (85.12.14)	-
신설	소로	1	24	10	70	국지 도로	소로 1-23 봉양리 54-7대	소로 1-23 애산리 432-426대	일반 도로	-	금 회	-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1	소로1-23	◦도로 변경 - B=4~6m→4~10m, 증) 4m - L=215m→340m, 증)125m	◦ 정선군 봉양리 주민의 교통 편의 제공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도로 폭 및 선형 변경
-	소로1-24	◦도로 신설 - B=10m, L=70m	◦ 정선군 봉양리 주민의 교통 편의 제공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도로 신설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 : 실음생
략

정선군 고시 제2020-244호

정선 예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정선 예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9일

정 선 군 수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 예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I. 농공단지 개요

1. 관리기관(관리권자) : 정선군(정선군수)

2. 조성목적

- 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 나.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전기업에 공장용지 적기공급
- 다.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정선군의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

3. 위치 및 면적·사업비

- 가.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72번지 일원
- 나. 면 적 : 107,260.8m²
- 다. 사업비 : 10,153백만원

(국비-균특2,281, 도비332, 군비200, 기타: 폐광지역개발기금 7,340)

4. 추진경위

○ 예미농공단지 조성계획 수립	: ' 06. 05. 10
○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 ' 07. 11. 13
○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농림부)	: ' 09. 08. 14
○ 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심의 요청	: ' 09. 08. 19
○ 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지정 승인(도)	: ' 09. 09. 08
○ 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지정고시(군)	: ' 09. 09. 09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환경부)	: ' 09. 09. 15
○ 농공단지공사 착공	: ' 09. 12. 15
○ 농공단지 부지조성 완료	: ' 10. 10. 21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착수	: ' 11. 06. 17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강원도고시제2011-199호)	: ' 11. 06. 17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준공	: ' 13. 02. 23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강원도 고시 제2013-108호)	: ' 13. 04. 05
○ 실시계획 변경 승인(강원도 고시 제2017-144호)	: ' 17. 08. 25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기 간 : 2009년 ~ 2010년 (2년)

나. 방 법 : 공영개발방식

6. 분양계획

(단위 : m²)

구 분	총 면 적	분양 면적			미분양 면적			조성기간
		소 계	조성완료	조성중	소 계	조성완료	조 성 중	
계	107,260.8	57,802.7	57,802.7	-	49,458.1	49,458.1	-	2009. 12 ~ 2010. 10
산업시설	73,194.4	57,802.7	57,802.7		15,391.7	15,391.7		
지원시설	7,851.2	-	-		7,851.2	7,851.2		
공공시설	17,426.6	-	-		17,426.6	17,426.6		
녹지시설	8,788.6	-	-		8,788.6	8,788.6		

※ 지원시설은 공동이용시설과 주차장을 말함

7. 입주 및 고용계획

구 분	입주업체수		고용인원(명)			비 고
	제조업	면적(m ²)				
계	13	73,194.4	계	현지고용	신규고용	
' 20. 9월	9	57,802.7	117	87	30	지원시설 제외
향후계획	4	15,391.7	250	160	90	

※ 입주업체수는 분양 및 입주계약체결, 공장설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입지 및 기반여건

가. 입지여건

- 사업대상지는 신동읍 중심시가지에 인접하여 인력수급 여건이 양호하며, 예미역을 경유하는 국철 태백선이 원주, 영월, 태백으로 연결되어 있어 타 시,군과의 접근성도 양호.
- 국도 4차선으로 확·포장된 국도 38호선과 연접하고 중앙고속도로 제천IC가 60km 거리의 위치로 광역적인 물류 수송여건도 양호한 접근체계를 형성.

나. 기반시설 여건

시 설 명	기반시설 현황 (' 20년 3월 현재)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 신·구 국도38호선과 이를 연결하는 국도 나들목과 연접 - 3개노선(1,116m)			국 토 건설부
용 수	◦ 공급능력(송·급수관로)완료 - 생활용수 : 34m ³ /일 - 공장용수 : 716m ³ /일			정선군
전 력	◦ 최대수요전력 : 1,490kW			한국전력사
통 신	◦ 회 선 : 73회선			(주)KT
환 경	◦ 공공폐수처리시설 ◦ 저류지 1개소 ◦ 완충녹지 및 구거		산업시설구역 분양 완료 후 공장 가동시 처리량 증설 계획	정선군

II. 관리기본계획

1. 기본방향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운영 및 활성화 도모
- 나. 생약초, 고랭지 배추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제조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위한 집적화 및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지 경쟁력 강화
- 다. 친환경 기업유치를 위한 적정규모의 산업시설용지 제공 및 조기정착과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

2. 농공단지 면적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계	107,260.8	100.0	
◦ 산업시설구역	73,194.4	68.2	17개 블록
◦ 지원시설구역	7,851.2	7.3	
- 공동이용시설	4,493.6	4.2	관리사무소,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공공폐수처리시설
- 주차장	651.0	0.6	
- 폐수처리장	1,067.0	1.0	
- 오폐수저류지	1,639.6	1.5	
◦ 공공시설구역	17,426.6	16.3	
- 도로	15,179.9	14.2	3개 노선(1,116m)
- 소공원	2,246.7	2.1	
◦ 녹지구역	8,788.6	8.2	

3.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가. 입주 대상업종(변경)

1	음식료품 :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2	지역특화업 :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3	기타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29), 기타 제품 제조업(33)
4	물류유통시설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 위 대상업종 중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성 검토 적합 업체만 대상

나. 입주자격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다. 입주 우선순위

- 1) 정선군 이전을 위하여 협약(MOU 등)을 체결한 업체
 - 2) 수도권 및 타시도에서 본사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이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전문 가공공장을 이전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업체
 - 3)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기업체
 - 4)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공해가 적은업체
- ※ 위 사항에 불구하고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 업체를 최우선으로 입주 조치

라. 사후관리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서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도모
- 분양용지의 불법 전매, 장기 유희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 입주계약 업체의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및 관리기본계획 준수
- 발생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그 사후관리에 철저 조치
- 기준치 이상 폐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
- 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및 사후관리 철저

마. 토지(분할, 분양)최소 한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하며, 미리 관리기관(정선군)과 협의
- 분양 예정 가격 : 68,367원/㎡(226,000원/평)

4.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역

가. 용도별 구역 면적

(단위 : m², %)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면 적	107,260.8	73,194.4	7,851.2	17,426.6	8,788.6
구성비	100.0	68.2	7.3	16.3	8.2

※ 지원시설은 공동이용시설과 주차장을 말함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

① 산업시설구역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전기 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29), 기타 제품제조업(33),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2)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창고

※ 배치계획은 “붙임” 으로 같음(변경)

② 지원시설구역

- 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제17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건축물로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③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 건축물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공용 건축물 및 관련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다. 용도별 구획 평면도(변경) : “붙임 참조”

5. 산업시설용지 업종별 공장 배치계획

가. 업종배치의 기준

- 유사 업종별 집단화 및 지원·공공시설과 연계성 제고를 고려한 배치
- 풍향 등을 고려한 업종배치로 인근지역으로의 악취 피해 최소화
- 주변지역 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지역 소득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나.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구분	대분류	중분류	면적(㎡)	구성비(%)
계			73,194.4	100
음식료업	C.제조업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24,432.8	33.4
지역특화업	C.제조업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전기 장비 제조업(28)	38,405.2	52.4
기타제조업	C.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전기 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29) 기타 제품 제조업(33)	4,007.3	5.5
물류 유통시설	H.운수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6,349.1	8.7

※ 업종별 분류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며, 업종별 배치계획은 분양에 따라 필지의 분할 또는 합병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다. 세부 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2020. 9월 현재		향 후 계 획	
		블록수	면적(㎡)	블록수	면적(㎡)	블록수	면적(㎡)
계		17	73,194.4	13	57,802.7	4	15,391.7
식음료업	10, 11	6	24,432.8	6	24,432.8	-	-
지역특화업	10, 11, 26, 27	8	38,405.2	6	27,020.8	2	11,384.4
기타제조업	27, 28, 29, 33	2	4,007.3	-	-	2	4,007.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1	6,349.1	1	6,349.1	-	-

※ 입주업체수 및 규모는 분양에 따라 필지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공동이용건축물, 기타 공공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용계획

가. 관리사무소

1) 시설규모

대지위치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4-3번지 일원(예미농공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 폐 율	11.7%	법정 : 70% 이하
대지면적	2,053.6㎡	용 적 륜	11.7%	법정 : 150% 이하
건축면적	240.65㎡	시설규모	지상1 층	
연 면 적	240.65㎡	주차대수	계획 : 0대	법정 : 1.2대 (200㎡/대)
층별 면적	지상 1층	240.65㎡		
	지상 2층	㎡		
	지상 3층	㎡		

2) 운용계획

-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회의실 및 관리사무실 운용

나. 기타 공공시설

1) 시설규모

구 분	면 적		2020. 9월 현재		향 후 계 획	
	수 량	면 적(㎡)	수 량	면 적(㎡)	수 량	면 적(㎡)
계	5	28,505.8	5	28,505.8		
주 차 장	1	651	1	651		
도 로	1	15,179.9	1	15,179.9		
소 공 원	1	2,246.7	1	2,246.7		
완 충 녹 지	1	8,788.6	1	8,788.6		
오 폐수저류 지	1	1,639.6	1	1,639.6		

2) 운용계획

- 종사자와 주민 및 이용자들의 휴식 및 정서생활의 함양을 위한 OPEN SPACE 운용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1) 시설규모 : 부지 1,067㎡

- 500㎡/일 (1단계 : 250㎡/일)

2) 운용계획

- 운영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계획

라. 근로자 종합 복지관

1) 시설규모

대지위치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8-3번지 일원(예미농공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 폐 율	26.96%	법정 : 70% 이하
대지면적	2,440.0㎡	용 적 른	26.96%	법정 : 150% 이하
건축면적	657.75㎡	시설규모	지상1 층	
연 면 적	657.75㎡	주차대수	계획 : 24대	법정 : 3.3대 (200㎡/대)
층별 면적	지상 1층	657.75㎡		
	지상 2층	㎡		
	지상 3층	㎡		

2) 운용계획

- 종업원의 여가활동 등 복지증진 지원 및 운용
- 입주기업체 근로자 자녀대상 아이돌봄센터 운용 등

마.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계획

- 관리비 징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계획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협의하여 사용계획을 수립 시행

7. 생산·수출 및 고용 전망

가. 생산 및 수출전망(연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내 수	수 출	가동율(%)	
향후전망	30,000	25,000	5,000	100	

나.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인력수급 전망

구 분	계	음식료업	지역특화업	기타제품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총고용인원	250명	90명	80명	60명	20명
현지고용인	160명	60명	50명	35명	15명
신규고용인	90명	30명	30명	25명	5명

다. 고용전망

입주기업			고용인원(명)			비 고
계	관내기업	이전기업	계	현지고용	신규고용	
17개	7개	10개	250명	160명	90명	

8.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연간)

가. 소득전망

- 17개 기업체를 유치하여 이로 인해 약 250명의 종업원 고용증대, 이중 현지인은 약 160명 수준의 고용효과 기대

구 분	계	현 지 인			외지인	비 고
		소계	농 가	비농가		
예미농공단지	250	160	48	112	90	

- 농외 소득증대 효과
 - 종업원 소득효과는 1인당 약 2,600만원/년 소득증대로 전체 약 65억원/년 (현지인 42억원/년) 규모의 소득 제고

9. 인근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 강화 방안

가. 경쟁력에 관한 전망

- 기존 가동중인 증산, 함백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업종이 대부분 상이해 단지내 유치기업에 저렴한 부지 분양 및 제도적 지원시 경쟁력 강화 전망

나. 협력 강화 방안

- 증산, 함백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제조업의 다양화된 제품 개발 및 보급으로 상호 발전체계 구축
- 기존 농공단지협의회를 통합한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운영 및 사무국 설치
 - 지원으로 상호 협력관계 유지

10.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농공단지 관리계획

○ 분양용지 세부 관리

①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법 제39조, 통합지침 제31조)

- 공장설립·사업개시 신고 전에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정선군)에 양도.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공고 후 선정된 다른 기업체에 양도 조치

- ② 산업용지의 환수(법 제41조, 통합지침 제33조)
 - 관리기관은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할 때에는 6월내의 시정명령 후, 당해 산업용지 환수 조치
- ③ 입주계약의 해지 등(법 제42조, 통합지침 제32조)
 - 관리기관은 기업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내의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 조치

- 입주계약을 체결후, 2년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수
 -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때
 -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미착수 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 입주계약을 위반한 때
- ④ 입주계약 해지후의 재산처분 등(법 제34조)
 - 상기 ③과 같은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중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입지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 조치
 -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타 기업체에 양도 · 1년 이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은 관리기관이 매수
- ⑤ 이행강제금(법 제43조의3)
 - 관리권자는 처분 ·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양도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 ·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 ⑥ 보조금(부지매입비) 지원기업의 사후관리(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6호)
 - 지방이전기업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간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관리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이전기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는 매각대금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 ⑦ 기타사항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계약 미 체결시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법 및 통합지침 규정을 적용

나. 환경관리

- 입주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원주 지방환경관리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
- 농공단지내 완충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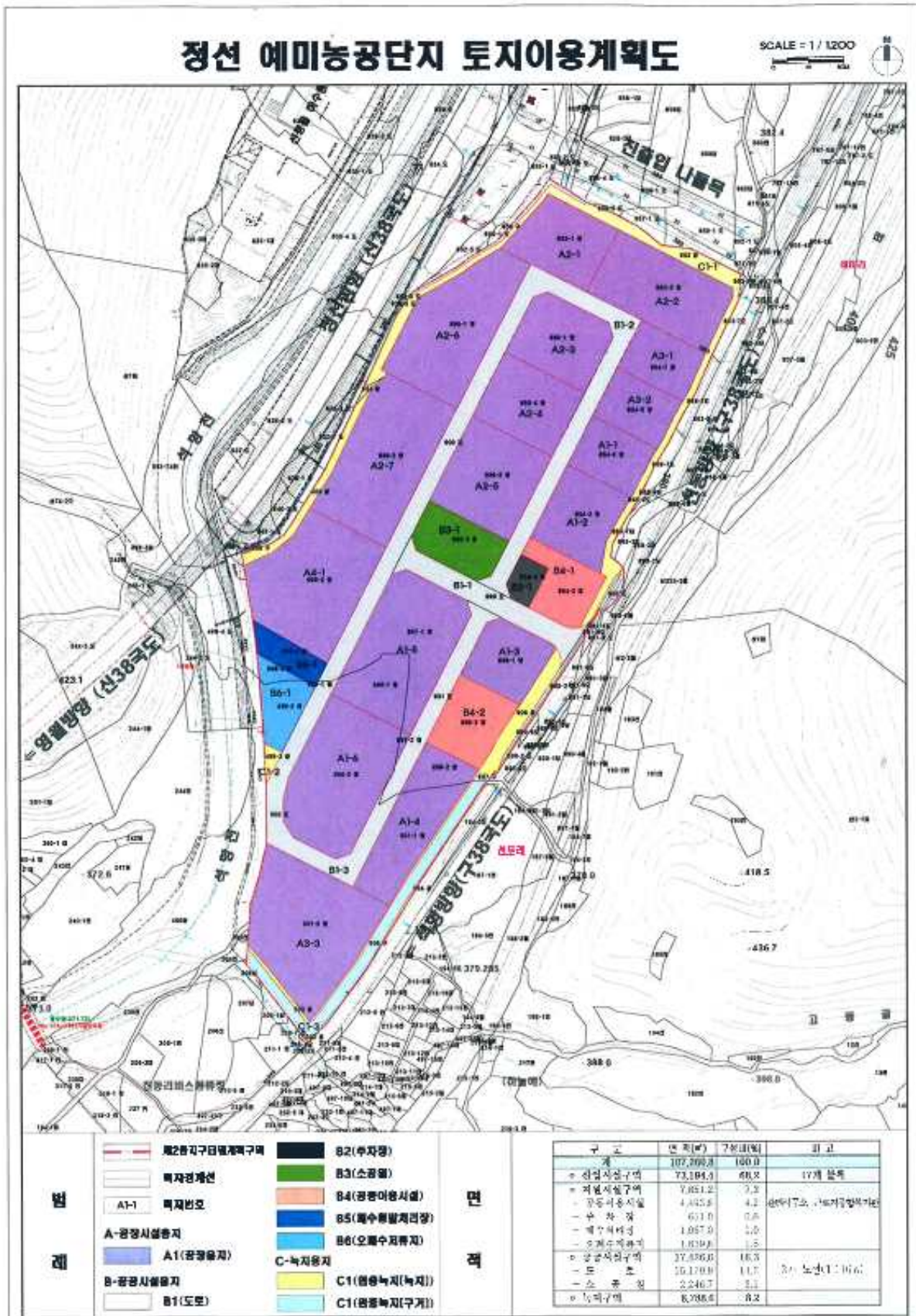
다. 안전관리

- 화재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파출소,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재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제 구축
- 입주기업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토록 권고
- 예비군편성과 단지 방호는 경찰서 및 군부대와 협조로 농공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위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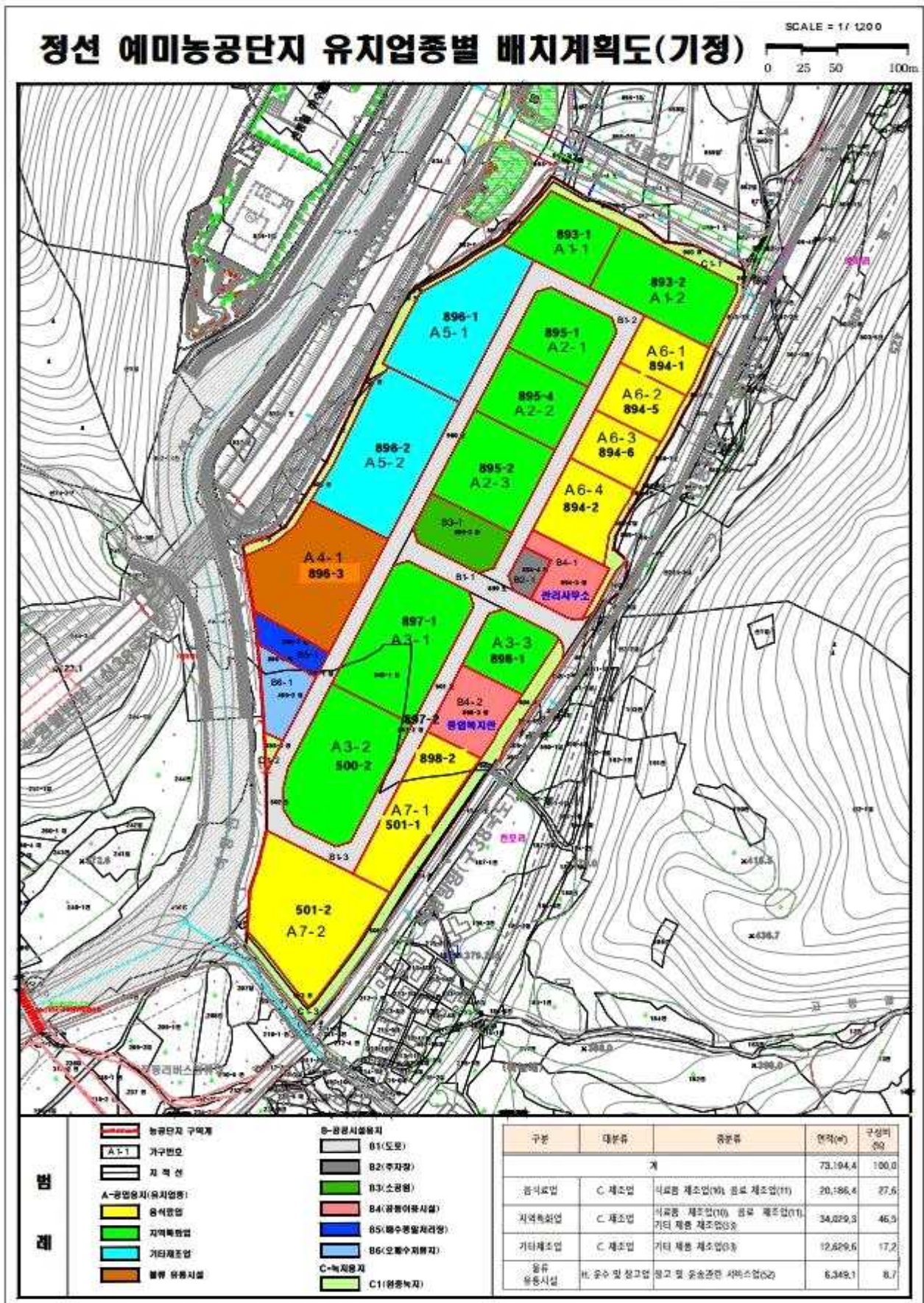
라. 기반시설 지원

- 농공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공업용수 부족시 지하수 이용 시설에 대한 관정 사업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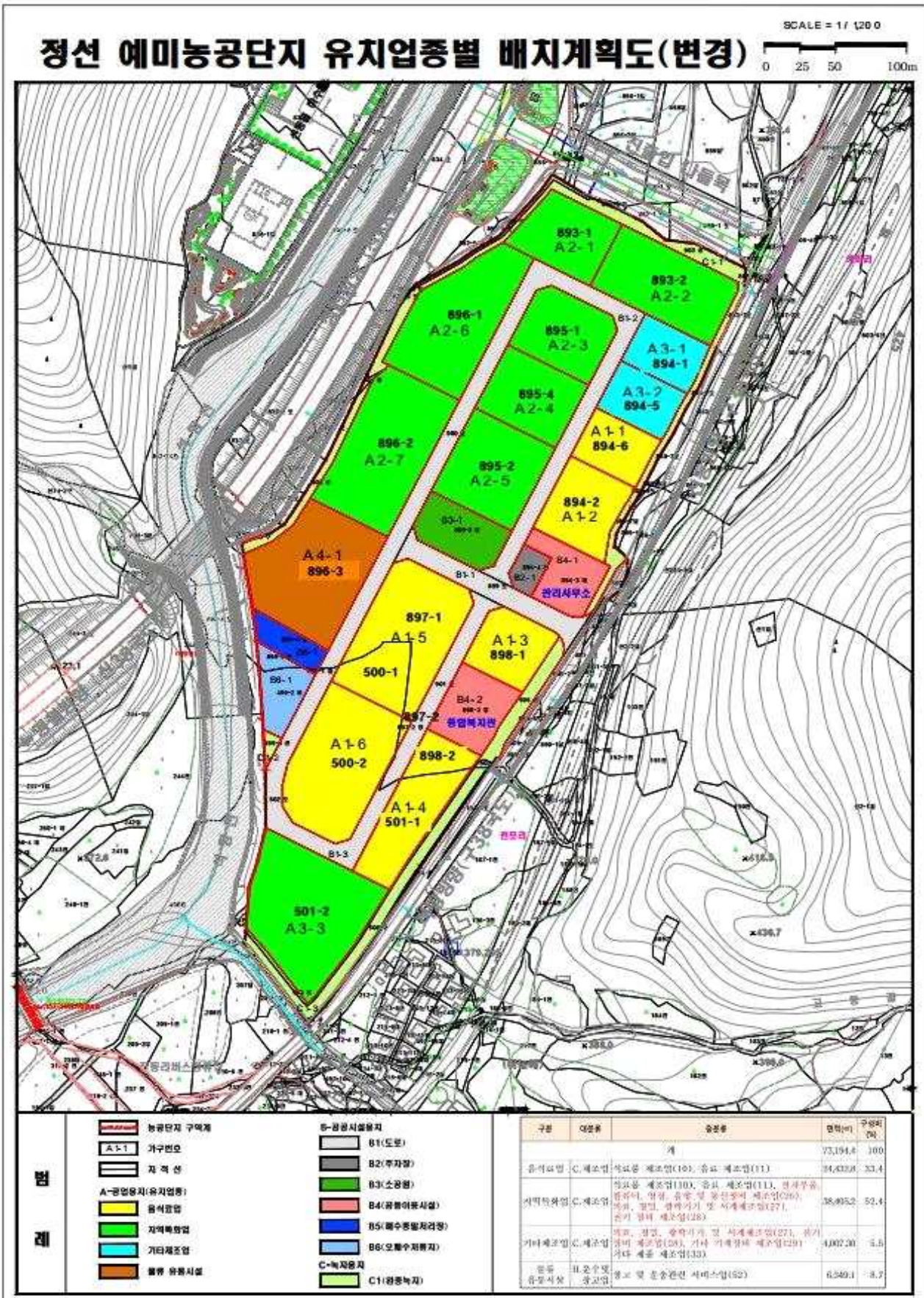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유치업종별 배치계획도(기정)



유치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0-1131호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4일

정 선 군 수

- 가. 공람목적: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 나. 위 치: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일원
- 다.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라.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면: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마.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정선군청 도시과 및 사북읍사무소
- 바. 공람기간: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이상 (2020. 10. 14. ~ 2020. 10. 29.)
- 사.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공람 기간 내 정선군청 도시과 및 사북읍사무소 서면 제출
-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0-1143호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 체결한 지자체 협업 제2공공기숙사(마포) 조성 사업이 2020년 12월 완료됨에 따라 2021년 재정 지원과 입사생 선발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 나. 202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대학생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사항(자격 제한 구체적 명시, 입사기회 차별요인 해소) 조례 반영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변경
 - 당초 :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조례
 - 변경 : 정선군 향토학사 운영 및 지원조례
- 나. 향토학사 명칭과 위치 명시(안 제3조)
 - 당초 : 1개소(춘천학사)
 - 변경 : 2개소(춘천학사, 마포학사)
- 다.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부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0. 10. 09. ~ 2020. 10. 28.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여성청소년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972), 팩스(033-560-2141)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 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향토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정선군과 협약으로 건립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학사”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연하여 건립 및 운영 지원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향토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포학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천동 19-8번지(마포공공기숙사 내)
2. 춘천학사: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번지(강원대학교 기숙사 내)

제4조(운영 및 재정지원 등) ①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이 서울특별시, 강원대학교와 체결한 각 업무협약에 따른다.

-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포학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금,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분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분담하는 경비의 납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과 서울특별시,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기관) 간에 구성한 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입사신청자격 및 선발) ① 학사에 입사 신청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선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인 또는 친권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둘 것
 2. 마포학사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신입생 및 재학생일 것.
 3. 춘천학사의 경우 강원도 춘천시 소재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일 것.
- ② 입사생은 1가구당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학사 선발 인원 미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그 밖에 입사생 선발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학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獎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 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정선군 공고 제2020-1144호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개정(법률 제16672호, 2019.12.03. 공포, 2020학년도부터 순차적 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변경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 나.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조례」 개정(강원도 조례 제4587호, 2020.7.31. 일부개정)으로 교복구입비 강원도교육청과 도-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
- 다. 관련 법령과 강원도교육청 조례 개정으로 우리군 조례 중 고등학교 교육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한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변경
 - 당초 :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 변경 : 정선군 교복구입 지원조례
- 나.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당초 : 군에 주소를 두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 변경 :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 다. 타 기관과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안 제5조)
- 라. 분담금 외 교복구입비 지원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6조)

3. 전부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0. 10. 09. ~ 2020. 10. 28.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여성청소년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972), 팩스(033-560-2141)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 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교복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정선군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지원 횟수는 중·고등학교 각 1회로 한다.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다른 기관과의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분담 비율과 지원 금액(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낮추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도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한다.

② 제5조의 분담금 외의 교복구입비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는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반납) 교육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교복비)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8. 3. 21.>

[전문개정 2007. 12. 21.]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3. 21.]

관계법령(교육비)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 부칙 <제16672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20. 2. 25.>]

[시행일]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부칙 <제30439호, 2020.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

적으로 시행한다.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46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 12. 30.>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전문개정 2017. 4. 18.]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법률 제16673호(2019. 12. 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부칙 <제16673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가 법률 제1667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4.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본조신설 2020. 2. 25.]

정선군 공고 제2020-1148호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가소득 지속 하락
- 나. 농업인구 지속 감소, 고령화 진행등으로 농촌사회 공동화 초래
- 다. 농업직불금 규모의 부족과 형평성 문제 대두
- 라.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조례안 제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 ①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2020.12.31.)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정선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 ②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2020.12.31.)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나. 지급 제외대상 (조례안 제6조)

- ① 신청 전전년도(2019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②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③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④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 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신청 전년도까지 각종 보조금에 대해 법령·조례 위반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사람

다. 지급액 및 지급방법 (조례안 제7조)

-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70만원)을 매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다.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0. 10. 08 ~ 2020. 10. 28.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71), 팩스(033-560-2599)
- 주 소 : (26131)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정선군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② 그 밖에 군수가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정선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정선군에 실제로 거

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10. 8.>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제2조(수산업의 범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8. 26.>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8. 26.>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읍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

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0-1153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형태에 따른 구분과 부과 규정 마련
-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히 설정하고, 소멸시효 적용 통일
- 지자체의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충분한 이의신청 기간 설정하고, 신속한 결정 통지 기간 마련
- 연체이자율 합리적 설정 및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도입

2. 주요내용

-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안 제2조)
 -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를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합류식하수관로 설치 지역은 수계별(하천별), 분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로 변경
- 사용료(안 제15조)
 -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을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로 변경
- 이의신청(안 제26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진·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으로

-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본세기기본법」 제89조에서부터 제96조를 따른다”를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로 변경
-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를 추가
-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추가

○ 가산금 및 독촉(안 제27조)

-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로 변경
-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 추가
- “2. 납부기한을 경과한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3” 추가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추가

○ 소멸시효(안 제28조)

-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추가
- “1. (채권)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 3년” 추가
- “2. (채무)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 5년” 추가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0. 10. 14. ~ 2020. 11. 3.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613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
- 전화 : 033-560-2939
- 팩스 : 033-560-2940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portal/openadmin/adminnews/legislativenotice>

붙임 가.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나.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다. 관계법령 발췌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 의 건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합류식하수관로 설치 지역은 수계별(하천별), 분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은 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채권)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 3년
2. (채무)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 5년소멸시효)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u>하수도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u>지정하고</u> <u>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100m이내로 한다.</u> <개정 2017.12.2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u>법</u> ----- <u>지정할 때에는</u> <u>합류식하수관로 설치 지역은 수계</u> <u>별(하천별), 분류식하수관로 설치</u> <u>지역은 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u> <u>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u> -----.
제15조(사용료) ① <u>법 제65조에</u>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u>법 제15조에</u>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사용료) ① <u>법 제65조제1항</u> 에 ----- <u>법 제15조</u>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
제26조(이의신청) ① <u>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u> 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u>자는</u>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u>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부터 제96조를</u> 따른	제26조(이의신청) ① <u>사용료 등의</u>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u>사람은</u> ----- ----- ----- ----- -----. ② <u>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u> 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다.<개정 2017.12.29.>

③ 신설

④ 신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군수는 공
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
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
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신설

제28조(소멸시효) 신설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
칙으로 정한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
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3/100×
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
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u>1. (채권)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 3</u> <u>년</u> <u>2. (채무)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u> <u>5년</u>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0-15호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예정인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정선군의회회의장

1. 추진배경

- 정선군 청년들의 소통 및 교류활동 지원,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창출과 지역 정착 기여 등 청년성장의 토대 마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 (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
- 청년활동 거점 공간의 설치 및 위치 규정 (안 제5조)
- 청년활동 거점 공간의 업무 및 조직에 관하여 규정 (안 제6조)
 - 자립기반 형성, 능력개발 프로그램, 교류 및 소통 프로그램, 경제 및 취업활동 등의 지원업무 수행
 - 관리책임자와 필요 직원을 두되, 그 정원·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함
- 이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
 - 청년, 법인·단체 등은 거점 공간을 무료로 이용,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따로 사용료를 정하여 징수
-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 (안 제8조)
 - 청년활동 거점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읍·면별 자생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행실적 평가 등을 통해 재위탁 가능

3. 예고기간 : 2020. 10. 8 ~ 10. 20 (12일간 / 초일 불산입)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0일까지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의회사무과)
- 전 화 : 033-560-2506
- 팩 스 : 033-562-5203
- 이 메 일 : k3735872@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관계법령에 따라 정선군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공간, 자립기반 형성 및 지원,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활동”이란 청년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법인(이하 “법인·단체”라 한다)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3. “청년관계법령”이란 청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과 그 시행령 등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법」
 - 나. 「청년기본법」
 - 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라. 그 밖에 법률

제3조(적용범위) 청년활동 거점(據點, hot spot)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청년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활동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청년 및 법인·단체 등은 건전하고 생산적 청년활동의 활성화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해야 한다.

제5조(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군 지역에서 청년들이 소통, 교류, 자립기반,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들을 선정하거나 조성하여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이하 “거점 공간”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거점 공간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③ 거점 공간에는 군의 지역적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공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연구실, 회의실
2. 창업과 교류의 장(場)
3. 배움의 공간

4. 특화사업의 공방(工房)
5. 그 밖에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6조(업무 및 조직) ① 거점 공간은 이를 이용하는 청년, 법인·단체 등에게 청년활동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1. 자립기반 형성
 2. 능력개발 프로그램
 3. 교류 및 소통 프로그램
 4. 경제 및 취업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업무
- ② 거점 공간에는 관리책임자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정원·채용, 근무·급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③ 관리책임자는 거점 공간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청년들의 이용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영계획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거점 공간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거나 수탁자에게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및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청년들이 거점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일별·계절별로 이용시간을 정하여 미리 군 인터넷홈페이지, 해당 공간의 게시판 등에 게재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청년, 법인·단체 등은 거점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해당 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거점 공간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청년, 법인·단체 등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따로 사용료를 정하여 징수하되, 청년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거점 공간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별 자생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② 거점 공간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탁업무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거점 공간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정선군의회 동의권을 얻은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탁업무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다.

[별표]

청년활동 거점 공간의 구분·명칭 및 위치
(제5조제2항 관련)

구분	시 설 명 칭	위 치	비고
1	고한읍 거점 공간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1-22	
2	사북읍 거점 공간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35 마을회관 2층	
3	남면 거점 공간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도원2길 27 무릉복지회관 2층	
4	임계면 거점 공간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84	

관 계 법 령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0-1176호

예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재난감시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예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고성능 재난감시CCTV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정선군 건설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1일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예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재난감시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재난에 취약한 예미지구의 위험 상황을 사전에 진단하고, 지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국지성 폭설, 호우 등을 사전에 감지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감시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장소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기간 : 2020. 10. 21. ~ 11. 09.(20일간)
5.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portal>)

6. 설치장소

연번	주 소	장 소	용 도	촬영 시간	녹화 기간	운영 기관	비고
1	신동읍 예미리 산 23-2	예미지구 1지역	재난감시	24시간	30일	건설과	
2	신동읍 고성리 40-3	예미지구 2지역	재난감시				
3	신동읍 고성리 58-1	예미지구 3지역	재난감시				
4	신동읍 고성리 146-2	예미지구 4지역	재난감시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 건설과(재해예방)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0. 21. ~ 11. 09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 정선군 건설과 재해예방팀

◦ 우편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건설과

◦ 팩스 : 033)560-2591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정선군 건설과 재해예방팀 (☎033-560-249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서				
사 업 명	예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재난감시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H.P)	()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재난감시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